

의안번호	제 368 호
의 결 연 월 일	2016년 월 일 (제 347 회)

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6년 4월 18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68
----------	-----

제출연월일 : 2016년 4월 18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조사업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외부위원 비율을 정하는 한편, 위원들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며,
- 교육재정교부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시기와 규모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교육지원사업 지원근거 마련 (안 제2조, 제3조)
 - 지원대상 추가 : 교육부장관이 설립 허가한 비영리법인의 충북지부
 - 지원사업 추가 : 예체능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위촉위원 비율을 정하고, 위촉직 위원들의 연임제한 규정을 마련하며, 당연직 위원들의 소속기관 직위명 변경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 (안 제11조)
 - 위촉위원 비율 :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
 - 위촉직 위원 연임제한 : 한 차례만 연임 가능
 - 도의 기획관리실장 → 도의 교육지원 관련 실국장
 - 교육청의 행정관리국장 → 교육청의 교육지원 관련 실국장
-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 마련 (안 제11조의2)
 - 위원들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전출을 위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시기와 규모를 규정 (안 제15조)
 - 징수세액의 90% 이상을 2개월 마다 다음 달 말일까지 전출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를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교육환경 개선을 통하여”를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통하여”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지원대상) 교육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지원대상은 충청북도지부에 한하며, 교육복지 증진사업을 지원한다.

1. 충청북도교육감이 인가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2. 교육부 장관이 설립 허가한 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과학·예체능 및 영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도의 기획관리실장과 교육청의 기획관리국장”을 “도의 교육지원 관련 실국장과 교육청의 교육지원 관련 실국장”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장 또는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를 밝혀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리·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도지사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5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교부금의 전출시기) 도지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

항에 따라 징수된 세액 중 100분의 90 이상을 2개월 마다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 재정상 긴급하거나 특별한 재정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전출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u>교육환경 개선을 통하여</u>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지원대상) 교육지원사업은 <u>충청북도교육감이 인가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u></p> <p>제3조(사업의 종류) 교육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3. (생략) 4. <u>과학 및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u> 5. (생략) 	<p><u>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 --의 <u>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통하여</u> -- ----- ----- ----- -----.</p> <p>제2조(지원대상) 교육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지원대상은 <u>충청북도지부에 한하며, 교육복지 증진사업을 지원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충청북도교육감이 인가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u> 2. <u>교육부장관이 설립 허가한 교육 관련 비영리법인</u> <p>제3조(사업의 종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3. (현행과 같음) 4. <u>과학·예체능 및 영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u> 5.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p><u><신설></u></p>	<p><u>제11조의2(위원의 제척 등)</u></p> <p>① <u>위원회의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u></p> <p>② <u>위원장 또는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를 밝혀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u></p> <p>③ <u>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리·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u></p> <p>④ <u>위원이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도지사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u></p>

관련규정 발취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중 교부금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중 교부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도를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는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는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1천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

③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④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시·도교육위원회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세출예산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⑦ 시·도는 관할지역 내의 교육·학예의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 호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